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896

발의연월일: 2024. 7. 18.

발 의 자: 김석기·김상훈·김도읍

김선교 • 송언석 • 안철수

서천호 · 이달희 · 강대식

최형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 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경찰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전담경찰관이 법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결성예방 및 해체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담당 학교에서발생한 학교폭력에 관한 정보 공유가 필수적임에도 학교와 경찰의 정보 공유를 위한 규정이 현행법상 부재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하는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리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전담경찰

관이 학교폭력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제20조의6에 따른 학교전 담경찰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① ~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
	을 인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폭력
	이 발생한 사실을 제20조의6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려
	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
	라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
	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경
	<u>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